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7월 13일

나. 발 의 자: 장순원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2021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제2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2021. 8. 3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장순원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1.6.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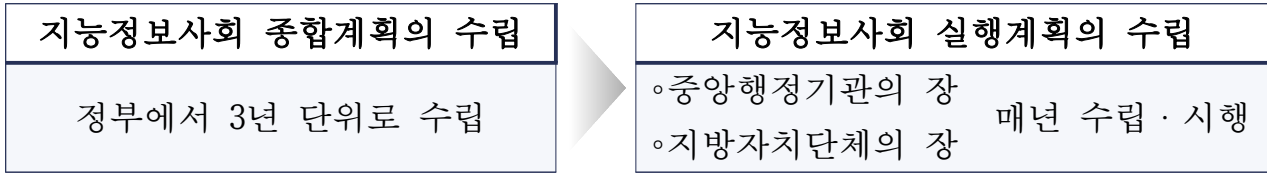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 조항 신설(안 제4조)
-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지능정보화 주관부서 운영(안 제5조 ~ 제6조)
-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용어·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되었으며,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 안 제2조는 상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초연결 지능정보통신망 등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핵심 용어들을 상위법 정의에 따르도록 생략하였음.
 - 안 제4조는 현행 조례의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삭제하고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으로 조문을 개정함. 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

본계획 수립 의무 규정이 삭제되고 실행계획 수립·시행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한 개정으로 보임.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 제5조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 주관부서 소관 국장으로 임명하게 하고, 수행 업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는 지능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종합적으로 조정·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지정과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제20조(지능정보제품 등의 지원) 및 제27조(정보화교육 수강료의 징수) 등에서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지 않고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였음.
- 그 밖에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지능정보화 관련 용어 및 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음. 이는 △정보화 → 지능정보화 또는 지능정보사회, △인터넷중독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정보통신서비스 → 지능정보서비스, △정보통신제품 → 지능정보제품 등으로 용어 및 관련 표현을 정비함.

○ 검토 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순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 365 호
----------	---------

발의년월일: 2021년 8월 일

발 의 자: 장순원 의원 외 7명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7344호, 2021. 6.10.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시행 조항 신설(안 제4조)
- 다.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지능정보화 주관부서 운영(안 제5조 ~ 제6조)
- 라.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용어·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비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1. 8. 20. ~ 8. 24.)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서비스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책

제2장 지능정보사회 시책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주관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능정보화 주관부서) ① 지능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능정보사회를 종합적으로 조정·추진하는 부서를 지능정보화 주관부서로 한다.

② 지능정보화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행계획 수립·시행
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능정보화 정책과제 연구
4. 구 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5. 지능정보화 자문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6.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능률화·효율화 추진
7. 정보화교육 시행
8.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추진

③ 지능정보화 주관부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고, 전산장비의 최적상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지능정보화 추진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보안성 보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의 기술적 평가·심의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 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디지털행정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도시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공동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 연계·공동이용·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능정보화 용역)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의 사유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할 때 지능정보화하려는 업무가 타 시·군·구에서 이미 지능정보화 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장 지능정보화자료 관리·제공

제13조(지능정보화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능정보자료의 현황 및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능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수수료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의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수료 징수방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2에 따른다.

제15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유지관리) 구청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장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4.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5. 그 밖에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정보문화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지능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능정보사회 추진을 위하여 정보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센터는 생활권 중심의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립 형태는 구 관내에 직접 설치하거나 민관 공동출자 개발방식 등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중심으로 운영되는 센터가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고 구가

권장하고 있는 지능정보사회를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지능정보제품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법 제4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정보격차 해소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교육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2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시설의 출입제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화교육

제23조(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부문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소속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정보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5. 전산업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4조(정보화교육 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되 자체 상설교육장, 동 주민센터, 교육기관, 학원 등 교육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정보화교육 강사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전문 강사로 위촉하여 수준 높은 정보화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구민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자체적으로 양성한 정보문화 인력을 해당 분야의 구민 강사나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교육기관 등에 정보화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화교육을 수탁한 자에 대하여 교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험가입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5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요원에 대해서 교육 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유상·무상의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6조(구민의 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활

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은 구민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과정을 편성 운영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정보화교육 수강료의 징수) ① 구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교육개강일까지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교육개강일 이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날짜를 계산하여 반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능정보화자료 수수료 징수기준(제14조제2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인 건 비	일반직 공무원 6급20호 봉급 ÷ 30 × 작업일수
2. 소 모 품 비	실 비
3. 제 잡 비	위 전체금액의 40%

주) 봉급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본급여를 말한다.

[별표2]

정보화교육 수강료 징수기준(제27조제2항 관련)

교 육 시 간	수 강 료
10시간 ~ 20시간	10,000원 이하
21시간 ~ 30시간	20,000원 이하
31시간 ~ 60시간	30,000원 이하